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10.21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.10. 7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0.10. 8.
- 다. 상정일자 :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0.10.21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 정 호 주민생활지원과장

### 가. 제안이유

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구의회 의원 활동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 (지방의회의원의 경직 등 금지) 규정에 위반되어, 우리구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에 안전을 기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1)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(안 제4조제2항)

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'구청장, 주민 생활국장, 보건소장, 구의회의원 2인, 실무협의체 위원장' 중 '구의회 의원 2인' 을 삭제하고자 함.

2)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”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전반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본 조례안은 안 제4조제2항의 대표협의체 위원 중 “구의회의원 2인”을 삭제하고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 : 없음